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6호 2020. 2. 5(수)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554호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 1
- 남원시 조례 제1555호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4
- 남원시 조례 제1556호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남원시 조례 제1557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 남원시 조례 제1558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2020-25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1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35

회 람											
--------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554 호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2. 친환경 택시의 대체사업
3. 브랜드택시 콜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4.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업
5.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업
6. 운수종사자의 제복 등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555 호

남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도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남원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시민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
- 2. 의료기관
- 3. 보육시설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등을 위하여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 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556 호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옷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요천로 1234-5”를 “요천로 1234-5, 1234-6”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2조 중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u>옷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u>요천로 1234-5</u>에 둔다.</u></p>	<p>제2조(위치) ----- ----- ----- <u>요천로 1234-5, 1234-6</u> -----.</p>
<p>제8조(위탁기간) ① <u>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과 수탁기관의 협약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8조(위탁기간) ① <u>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u>」를 준용한다.</p>	<p>제12조(준용) ----- ----- 「<u>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u>」-----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557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0명”을 “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년으로 하
되,”를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의2제1항 및”을 “영 제6조의2제1항, 제2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축 또는”을 “증축하거나”로, “법령 등의 규정”을 “법령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법 제57조에 따라 제30조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증축 또는 개축”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본 조례 제정”을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1일”로, “제31조에 따른”을 “제31조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을 “개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6조제2호 중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한다.

제20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제외한다)”를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제21조 제3항 전단 중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의 회원”을 “공개 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한다.

제25조 제5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 제1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제2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전단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5조 제3항 중 “1미터”를 “2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0.5배”를 “1배”로, “0.25배”를 “0.5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를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로, “0.4배”를 “0.8배”로, “0.2배”를 “0.4배”로, “0.5배”를 “1배”로, “0.25배”를 “0.5배”로 한다.

제37조 제2항 단서 중 “4톤”을 “2톤”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3]<개정 2010.4.27., 2014. 4. 2. 2017. 6. 16>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립식	제한 없음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하 원	철골조립식	100제곱미터 이하	이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하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이경관지구는 불가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준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 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안 련법」 및 「도로법」 그 밖의 관련법 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간이포 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 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가 아닌 것)	제한없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건축법」 및 「소방 관련법」 등 그 밖의 관 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2) 면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할 부
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제4조(구성) ① -----

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⑧ (생략)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 150명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는 ----- . <단서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 따른다.

⑧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4. (생략)

⑤ ⑥ (생략)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4. (현행과 같음)

⑤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원회의 의결로 같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영 제6조의2제1항, 제2항 및 -----

-----.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
-- 법령등-----
--
3. -----

법 제57조에 따라 제30조에서 정하는 면적-----
----- 증축
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 5. 본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31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1일 -- 제31조에서 정하는 -----
- 6. ----- 개축하는 -----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사법」에 따른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 (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제외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사람

2. 업무대행건축사에서 해임된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2. -----

----- 검사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최에 따른 필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같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4.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대지

-----.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지구-----

안의 공지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조형수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미터 이상의 교목을 3미터 이내마다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10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중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⑤ ~ ⑦ (생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략)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미터 -----

④ -----
 ----- 1배 -----
 ----- 0.5배 -----

⑤ --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 0.8배 -----
 ----- 0.4배 -----
 ----- 1배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0년 2월 5일

남원시 조례 제 1558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미터”를 “직선거리 300미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제1항 중 “하수처리구역”을 “하수처리구역 중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 단서 중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를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운반 및 처리”를 “수집·운반”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및 처리 수

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분뇨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의 양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자”를 “대상자 및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 사용료를 감면

제26조제1항 중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로, “이의신청할”을 “부과액을 이의신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 중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다”를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부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제30조 제12호 중 “운반·처리수수료”를 “운반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분뇨운반·처리·수수료”를 “분뇨운반수수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의 적용례) 조례 제13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20년 4월 납기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3조제2항)

구분 업종	사용요율 (m ³ /월)	m ³ 당 단가(원)			
		현행	2020년 04월 납기 분부터	2021년 01월 납기 분부터	2022년 01월 납기 분부터
가정용	1-10	346	395	464	543
	11-30	432	494	580	678
	31이상	635	725	852	997
일반용	1-50	617	756	950	1,172
	51-100	677	829	1,043	1,286
	101이상	784	960	1,207	1,490
대중탕용	1-500	504	567	655	756
	501-1,000	580	652	754	870
	1,001이상	678	749	849	963
산업용	톤당	398	456	537	629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제13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 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begin{aligned} & - \text{수질하수도사용료(원)} = \text{오염부하량}[\text{수질초과농도(mg/L)} \times \text{시간당 폐수배} \\ & \text{출량(m}^3\text{/시간)}] \times \frac{1}{1000} \text{(kg/g)} \times \text{1일 조업시간(시간/일)} \times \text{30일} \\ & \quad \times \text{kg단가(원/kg)} \end{aligned}$$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3조제1항)

정 화 조 청소 수 수 료		분 뇨 수 거 요 금
기본요금	초과요금	
750리터까지 11,000원	리터당 13원	리터당 11원
※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은 1리터는 1kg으로 적용함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u>300미터</u>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 ----- ----- ----- <u>직</u> <u>선거리 300미터</u> -----.</p>
<p>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u>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u></p> <p><u>1. 분뇨처리시설 및 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로와 인공구조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u></p> <p><u>2.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u></p>	<p>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u><삭 제></u></p>
<p>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u>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u></p>	<p>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u><삭 제></u></p>
<p>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p>	<p>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p>

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 하수처리구역 중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경우에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생략)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24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

등의 부과·징수 등) ① -----
----- 수
집·운반-----

-----.

1. -----

----- 수수료-----

-----.

2. (현행과 같음)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하는 분뇨의 양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삭제>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생략)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 6.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

제25조(감면 등) ① -----

수집·운반수수료-----

- 1. (현행과 같음)
- 2.-----

----- 대상자 및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물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3. ~ 6. (현행과 같음)

7.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는 월 사용량의 5세
제공미터(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5세
제공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 사
용료를 감면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의신청) ① -----
----- 수

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 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9조(소멸시효)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

집·운반수수료-----

부과액을 이의신청 할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소멸시효) -----

-----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2.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환부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제30조(권한의 위임) -----

임한다.

1. ~ 11. (생략)

12. 제23조에 따른 분뇨 운반·처리수수료의 징수

13. 제25조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운반·처리·수수료 감면

14. ~ 16. (생략)

-----.

1. ~ 11. (현행과 같음)

12. ----- 운반수수료-----

13. -----

-- 분뇨운반수수료 -----
--

14. ~ 16.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고시 제2020-25호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1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0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 1-10호선)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20년 2월 5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10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10호선)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0	35	주간선 도로	2,700	2호광장 향교동 232-9	대로2-1 신정동 산63-1	일반 도로	중앙 공원	건설부고시 제1963-520호 (‘63.8.26.)	면적 95,919m ²
변경	대로	1	10	35	주간선 도로	2,700	2호광장 향교동 232-9	대로2-1 신정동 산63-1	일반 도로	중앙 공원	건설부고시 제1963-520호 (‘63.8.26.)	면적 96,394m ²

나. 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10호선)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0	대로1-10	°선형변경	°도로 개설 현황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선형 변경

2.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